
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의무 가이드라인

2025. 12.



해양수산부
수산직불제팀

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 의무 가이드라인

1 개요

1] 가이드라인 제공 목적

-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(이하 '직불금') 신청 방법,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,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을 안내
-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(이하 '직불제')에 대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

2] 직불제 운영 목적 및 내용

- (목적) 수산업·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
- (내용) 연근해 어업인단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'수산자원 보호 준수 의무'를 선택하여 이행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

<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 >

기본 의무	총허용어획량(TAC) 할당 및 준수
선택 의무	① 일시적·자율적 조업중단(休漁) ② 어획증명(전자어획보고) ③ 어선 감척 ④ 그 밖의 의무

- 1) 기본 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 의무 사항을 선택, '그 밖의 의무'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설정 시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 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1개로 간주
- 2) '어선감척'은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 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인정되지 않음

3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

□ 지급신청 단체 구성

- (단체 구성) 근해어업,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, 근해어업,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
- (단체 구성 최소 단위) 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(이하, 신청 단체)를 구성하되, 근해어선은 10척 이상, 연안어선(구획어업 포함)은 20척 이상으로 구성
 - 다만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,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
 - ※ 「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106호)에 따른 3단계(정착) 대상 해당

□ 준수 의무 신청 및 이행계획 작성

- (준수 의무 신청) 기본 의무 및 2개 이상의 선택 의무 신청
 - 기본 의무는 신청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, 선택 의무는 구성원 4/5(80%) 이상이 참여해야 하되, 선택 의무 중 어획증명은 구성원 1/2(50%) 이상 참여 시 인정
 - ※ 신청 단체가 설정한 준수 의무에 미참여하는 개별 신청 어선도 기본 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 의무를 필수로 신청 및 이행하여야 함
- (이행계획 작성) 신청 단체가 제출하는 세부 이행계획서는 적합성 평가와 이행 점검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
 - ※ 이외 방법으로 작성할 시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감점받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 단체가 제출한 세부 이행계획서를 검토 및 신청내역 확인 목록 서식을 작성해야 함(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 서식)
- (이행계획 기간) 준수 의무 이행계획은 준수 의무 이행 기간('26.1.1.~ 9.30.) 이내에서 설정
 - ※ 당해연도 내 직불금 지급 완료를 위해 9.30.까지 준수 의무 확인이 불가피함

□ 적합성 평가

- (평가 체계) 지급대상 후보 신청 단체(이하 '후보 단체') 선정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단체를 분리하여 실시
- (적합성 평가 제외) 적합성 평가는 후보 단체가 제출한 신청서,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시
 - 후보 단체가 작성한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의 허위사실 적발 시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

□ 이행 점검

- (점검 내용)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증빙자료 확인 및 상시·집중 점검 등을 통해 이행계획의 준수 여부를 확인
 - ※ 단체 구성원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 허가번호가 변경되는 경우, 해당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
- (직불금 지급 제한) 후보 단체 구성원의 이행세부계획서 준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직불금 지급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

< 직불금 지급 >

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	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감액 비율	비고
20% 이상 30% 미만	1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■ 인원 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하위비율은 '올림' 처리하고 상위 비율은 '버림' 처리
30% 이상 40% 미만	20%	
40% 이상 50% 미만	40%	
50% 이상	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	

* 부적격 구성원 : 후보 단체의 구성원이 설정한 준수 의무 항목 중 미이행 항목이 있는 구성원

□ 신청서 제출

- (제출 방법) 신청 단체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(직불금) 신청서를 제출하며, 개인 신청은 불가

- (제출 기간 및 장소) 신청 단체는 '25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
신청 단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(시·군·구)에 신청서류를 제출
- (제출 서류) 단체 및 개인 선정신청서, 이행세부계획서 등
 -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(별지 제1호)
 -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(별지 제2호)
- ※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로 작성 필요
- 신청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(별지 제3호)
- 신청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이행 세부계획서(별지 제4호)

< 직불금 신청서 >

구분	신청서 및 계획서	신청 시 첨부할 증빙자료
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(단체) <별지 제1호> · 지급대상단체 이행세부계획서(단체) <별지 제2호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'자율협약서' 또는 '회의록' * 신청한 기본/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을 반드시 포함
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<별지 제3호> ·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 <별지 제4호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상단체 구성원의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

2

평가 총괄표

구분	준수 의무	배점	평가 지표		점수			
기본 의무	총허용어획량 준수 ¹⁾	50	TAC 적용율 (50)	5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90% 이상 TAC 관리	50			
				4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80% 이상 TAC 관리	45			
				3개 어종 이상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70% 이상 TAC 관리	40			
				2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50% 이상 TAC 관리	35			
				1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30% 이상 TAC 관리	30			
선택 의무	일시적·자율적 조업중단 *해당 기간 전면 조업 중단 *특정 지역 조업 중단은 불인정	20	참여율 (5)	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	5			
		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100% 미만 참여	3			
			중단 기간 (15)	연속 60일 이상	13~15			
				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	11~12			
				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	9~10			
				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	7~8			
	어획증명 (전자어획보고)	15	참여율 (15)	참여 구성원의 전원 참여	15			
				참여 구성원의 90% 이상 100% 미만 참여	13			
				참여 구성원의 80% 이상 90% 미만 참여	11			
				참여 구성원의 70% 이상 80% 미만 참여	9			
				참여 구성원의 60% 이상 70% 미만 참여	7			
	어선 감척 (선택의무 개수로 미인정)	5	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없는 경우		5			
			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있는 경우		3			
		그 밖의 의무	10	최대 3개 항목 신청 가능(단, 10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)				
				참여율 (2)	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		2	
			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100% 미만 참여		1	
				수거량 (3)	근해어업		연안어업	
					척당 3.5톤 이상		척당 200kg 이상	3
					척당 2톤 이상 3.5톤 미만		척당 100kg 이상 200kg 미만	2
					척당 1톤 이상 2톤 미만		척당 50kg 이상 100kg 미만	1
어구보증금제 이행 ³⁾				5	어구보증금제도 대상 여부		5	
생분해성 어구 사용				5	단체 구성원의 90% 이상 참여		5	
			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90% 미만 참여		3	
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⁴⁾				5	단체 구성원의 90% 이상 참여		5	
			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90% 미만 참여		3	
어구 제한 ⁵⁾	5	어구사용량 제한 또는 그물코 크기 제한 등 시행 여부		5				
체장·체중제한 ⁵⁾	5	포획 체장·체중 제한 시행 여부		5				
종자방류	5	종자방류 여부		5				
기타 준수 의무	5	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		5				

- 1) 전체 어획량에 대해 TAC 시범을 실시하는 경우 TAC 대상 어종을 1개로 적용하고, 「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」 2단계, 1단계 및 지자체 TAC 시범 어종은 최대 2개 어기만 인정
- 2) 근해어선 중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연안어업 해양쓰레기 수거항목 평가기준 적용
- 3)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 업종만 인정
- 4) 「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(국립수산과학원)」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
- 5)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및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등에 제시된 제한 의무보다 강화된 의무 계획만 인정

4 준수 의무 사항

기본 의무 ① 총허용어획량(TAC) 준수

가. 개요

- (이행 목적) 총허용어획량(TAC)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TAC 참여 유도
- (평가 방향) TAC 관리 어종이 많은 업종 등 TAC 참여 정도가 높은 신청 단체(어업인)에 높은 점수를 부여

나. 신청 단계

□ 신청 방법

-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본 의무 중 ‘해수부/지자체에서 정한 TAC 준수’ 계획을 필수로 선택하여 작성
 - ※ TAC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신청 가능
- 신청 단체는 개인(구성원)의 이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TAC 준수 이행 계획을 작성 및 제출

□ 신청 단체 구성원(개인)

- (선정신청서 작성) 신청 단체의 구성원은 ‘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(개인)(별지 제3호)’ 내 지급요건(준수의무) 중 TAC 준수 항목에 표기

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				
○ 지급요건(준수의무) : 기본의무인 TAC 준수 항목에 표기				
<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【별지 제3호】 >				
지급요건 (준수의무)	기본의무	선택의무		
	TAC 준수	일시적/자율적 조업중단	어획증명 (전자어획보고)	그 밖의 의무
	[○]		[]	[]

- (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TAC 준수에 대한 이행계획을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 계획서 및 증빙자료(개인)(별지 제4호)'의 '1. 필수업무' 항목란에 작성

※ 작성 요령은 신청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부문 참고

□ 신청 단체

- (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)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(별지 제2호)'의 '1. 필수업무' 항목란에 작성

- 단체는 구성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(개인) 등을 토대로 단체의 TAC 대상어종 및 배분량 등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

※ TAC 이행계획은 「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'TAC 계획')」 제2조제3항 각 호의 3단계, 2단계, 1단계 기준으로 작성. 단 **시·도관리 연안 TAC** 시범은 '26.7~'27.6 어기 기준으로 **계획을 작성하고 매달 지자체에서 소진량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어업관리단에 제출(어업관리단은 계획 및 월별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점검 결과 제출)**

- 작성 항목 : 참여어선 수, 대상어종 및 기간, 단체 배분량, 증빙자료, 참여 어업인 명단(별첨) 등

※ **시·도관리 연안 TAC** 시범은 '26.7~'27.6 어기 기준으로 작성하되 참여어선 수, 대상어종 및 기간, 참여 어업인 명단만 기재

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

- 신청 단체는 반드시 기본의무로 해수부/지자체에서 정한 ㉠배분량 준수를 선택하고, 이에 대한 이행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
- 신청 단체는 '참여 어업인 명단 서식'에 TAC 참여 어업인 명단과 어선별 배분량 등을 작성하고, 이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

<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【별지 제2호】 >

구분		①	②	③	④	⑤	
		참여 어선 수	대상어종 및 기간	배분량	배분량 설정근거	평가지표	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
기본 의무	해수부/지자체에서 정한 ㉠배분량 준수	총 00척 중 00척 참여	○○○ '25.7 ~ '26.6	○○○톤	해수부(또는 지자체) 할당	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	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, 소진량 증빙 자료, 수협위판기록 등

① (참여어선 수)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'해수부/지자체에서 정한 ㉠배분량 준수'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

※ 기본의무는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, 전원 미참여 시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

- ② (대상어종 및 기간, 배분량) 단체가 참여하는 TAC 대상 어종과 기간을 작성하고, 배분량은 신청 단체 구성원의 어선별 배분량을 모두 합한 배분량으로 기재(어선별 배분량은 별첨)
- ③ (배분량 설정 근거) '해수부 할당' 또는 '지자체 할당'으로 기재
- ④ (평가지표) '25.7~'26.6 어기 "TAC 어종 수" 또는 '24.7~'25.6 어기 "TAC 관리비율" 중 하나를 선택기재
 - ※ TAC 관리 비율(%) = '24.7~'25.6 어기 TAC 소진량(A) / '24.7~'25.6 어획량(B)
 - A는 신청단체 구성 어선의 TAC 소진량(수산자원공단) 총합계, B는 신청단체 구성 어선의 수협위판기록(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어획실적 보고자료) 총합계
- ⑤ (이행실적 확인 서류 및 증빙자료) 이행 점검 시 검토될 증빙자료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며, '어선별 배분량할당증명서'는 사업 신청 시 첨부
 - ※ 인정되는 증빙자료 : 수협위판기록, 이전 어기 소진량 자료(수산자원공단 또는 지자체) 등
 - ※ 단, 증빙자료를 수협위판기록으로 기재할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시행지침 내 참고서식 4 「총허용어획량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」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함

다. 평가 단계(적합성 평가 기관)

□ 평가 기준 및 방법

- '25.7~'26.6 어기 TAC 적용을 받는 어종의 수 또는 이전 어기 ('24.7~'25.6 어기)의 업종별 TAC 관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
 - '24.7~'25.6 어기에 'TAC 계획' 3단계를 적용하고 있던 업종은 신규 어종으로 2단계, 1단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어종도 TAC 적용 어종으로 추가 인정
 - 'TAC 계획' 2단계, 1단계 어종 업종 또는 **시·도관리 연안 TAC** 시범 업종은 적용 어종의 수에 관계없이 1개 어종 점수만 부여하고 TAC 관리비율에 따른 점수는 미반영
 - TAC 관리 비율은 신청단체 구성 어선 전체의 '24.7~'25.6 어기 어획량 중 '24.7~'25.6 어기 **3단계 TAC** 소진량 비율로 산정

TAC 평가지표				
총허용어획량 준수	50	TAC 적용율 (50)	5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90% 이상 TAC 관리	50
			4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80% 이상 TAC 관리	45
			3개 어종 이상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70% 이상 TAC 관리	40
			2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50% 이상 TAC 관리	35
			1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30% 이상 TAC 관리	30

- 시·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여러 개의 어종, TAC 관리 비율 등과 관계없이 1개 어종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정

라. 이행 점검 단계(어업관리단)

□ 개요

- (점검 기간) 상시점검 : '26.2.23~9.30 / 집중점검 : '25.9.1~9.30.
- (점검 대상) 신청 단체의 구성원 전원

□ 점검 사항

- (이행 기준)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36조에 따른 “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” 등 준수
- (이행 점검 내용) 어업인의 TAC 배분할당증명서와 판매실적 증빙자료의 대조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**시스템 확인**
 - ※ 증빙자료 : 수협 위탁판매 기록, 수산자원공단 또는 지자체 소진량(수산정보통합 시스템 내 조회) 등. 단,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내에서 조회된 수협 위탁판매 기록이 미비할 시 수협 위탁판매 실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
 - 시·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'26.7~'27.6 어기 TAC 시범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내용을 확인
 - ※ 지자체에서 매월 소진량을 점검하여 어업관리단에 월별 점검결과 제출(지침, 별지 제8-1호 서식 추가)
- (이행 확인) 배분할당증명서의 어획량 제한 준수 시 이행으로 처리
 - 시·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'26.7~'27.6 어기 TAC 시범 실시, 이행계획 이행 시 이행으로 처리

선택 의무 ② 일시적·자율적 조업 중단(休漁)

가. 개요

- (이행 목적) 어획노력량 감소 등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 일시적·자율적 조업 중단(이하 '조업 중단') 실시 유도
- (평가 방향) 조업을 중단하는 기간과 신청 단체의 구성원이 조업 중단 계획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

나. 신청 단계

□ 신청 방법

- 신청 단체는 구성원(개인)의 이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
- ※ 신청 단체의 구성원이 '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'에 조업 중단 항목을 선택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

□ 신청 단체 구성원(개인)

- (선정신청서 작성) 신청 단체의 구성원은 '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(개인)(별지 제3호)' 내 지급요건(준수의무) 중 조업 중단 항목에 표기

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				
<p>① 지급요건(준수의무) : 선택 의무에 일시적/자율적 조업 중단 선택</p> <p>☞ 조업 중단을 선택한 단체의 구성원은 개인 선정신청서의 '선택의무' 내 '조업 중단' 항목을 선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【별지 제3호】 ></p>				
지급요건 (준수의무)	기본의무	선택의무		
	TAC준수	일시적/자율적 조업중단	어획증명 (전자어획보고)	그 밖의 의무
	[]	[○]	[]	[]

- (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) 선정신청서에 조업 중단 항목을 표기한 구성원은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(개인)(별지 제4호)'의 '2. 선택의무', 조업 중단 항목란에 이행 계획을 작성
- 개인은 신청 단체의 구성원과 합의하여 설정한 조업 중단 기간 등의 계획을 작성
- 조업 중단 기간이 해당 업종의 법령상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, 어구사용 금지기간(이하 '조업제한기간')과 중복이 되면 그 중복 기간은 조업 중단 기간에서 제외

※ 자세한 작성 요령은 신청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부문 참고

□ 신청 단체

- (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)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이행 계획은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(별지 제2호)'의 '2. 선택의무', 조업 중단 항목란에 작성
- 단체는 구성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(개인) 등을 토대로 단체의 조업중단 기간 등 세부이행계획을 기간별로 작성
- 작성 항목 : 참여어선 수, 조업중단기간, 증빙 자료 등

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			
○ 신청 단체는 해당 항목에 참여어선 수, 조업 중단 기간, 증빙 자료 등 이행계획을 기재			
- 일시적·자율적 조업중단 신청 단체는 <u>조업구역, 특정 어종 조업과 무관하게 조업 중단 기간 동안은 전면 조업을 중단해야 하며, 조업 사실 확인 시 미이행 처리됨</u>			
<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선택의무 작성 서식 【별지 제2호】 >			
일시적/자율적 조업 중단	①	②	③
	참여어선 수	조업 중단 기간	증빙 자료
	총 00명 중 00명 참여	오징어 '26.6.1 ~ 6.30(1개월)	출입항기록 및 항적 자료 등
① 참여어선 수 : 단체의 구성원 중 조업 중단 준수 의무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			
※ 단체의 구성원 4/5(80%) 이상이 참여해야 함			
예시)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경우 선택의무 참여어선은 24명 이상이어야 함			

② 조업중단 기간 : 단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조업 중단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, 연속하는 날짜 15일 이상을 설정

- 조업 중단 기간은 '26.1.1.~9.30.' 기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
- 조업중단 기간은 조업제한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고, 조업제한기간을 포함하여 조업중단 기간을 설정할 경우는 선택의무 항목에서 제외됨. 단, 조업제한기간 앞·뒤로 조업중단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연속하여 설정한 것으로 인정됨

< 작성 예시 >

□ 예시 단체 특징 - 연안어업단체, 기본의무 : 자율적 어획량 제한 선택, 직불제 참여어선 : 20명, 주요어획 어종 : 해삼(80%), 전복(20%)

< 올바른 작성 예시 >

구분	참여어선 수	주요어획 어종 및 기간
사례1 법령상 조업 제한기간 앞·뒤로 조업중단 기간을 설정	총 20명 중 20명 참여	해삼 / '26.6.26.~6.30.(5일) 해삼 / '26.8.1.~8.10.(10일) ※ 해삼 금어기 : 7.1.~7.31.
사례2 연속된 조업중단 기간 설정	총 20명 중 20명 참여	해삼 / '26.8.1.~9.30.

< 잘못된 작성 예시 >

구분	참여어선 수	주요어획 어종 및 기간
사례1 참여척수 미달	총 20명 중 16명 참여	해삼 / '26.8.1.~9.30.
사례2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어종 미제시	총 20명 중 20명 참여	전복 / '26.7.1.~8.31.
사례3 조업 중단 기간 월 단위 제시	총 20명 중 20명 참여	해삼 / '26.8월~9월
사례4 연속된 조업 중단 기간 미설정	총 20명 중 20명 참여	해삼 / '26.8.1.~8.5.(5일) '26.8.11.~8.20.(10일)

※ 조업 중단 계획을 잘못된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한 경우는 객관적인 적합성 평가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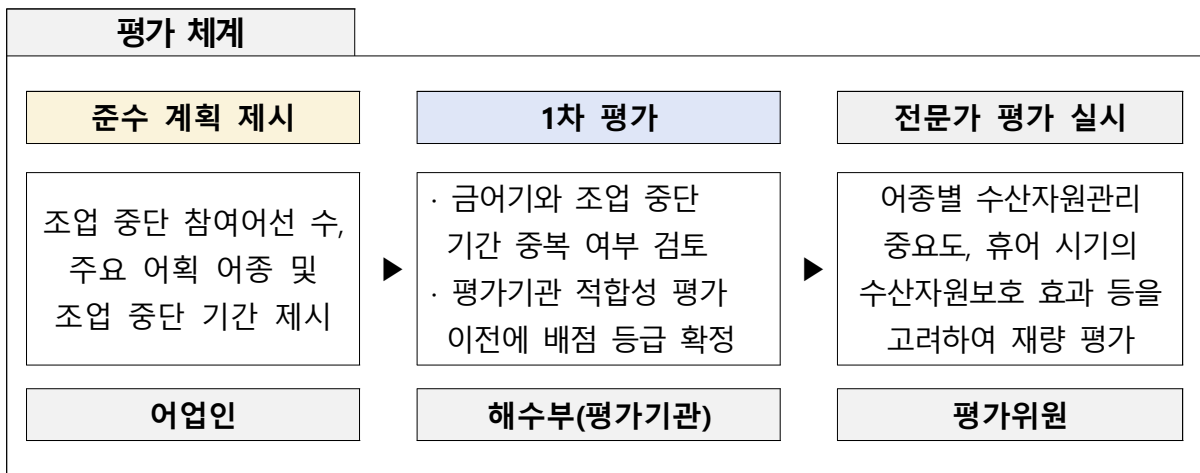
③ 증빙 자료 : 이행 점검 시 검토될 증빙자료로 '출입항기록'을 기재해야 함

※ '출입항기록' 외 항적 자료, 무선통신 보고, 어획보고 자료 등 증빙 자료 제출

다. 평가 단계(적합성 평가 기관)

□ 평가 체계

- (신청 단체) 신청서에 참여어선 수, 조업 중단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
- (지자체) 신청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'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(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)'을 작성한 후 이행세부계획 내용 등을 "수산정보포털"에 입력
- (평가기관)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기간 중 조업 제한 기간과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,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여부와 조업 중단 기간에 따라 점수를 확정
 - ※ 기준① : 전원 참여 여부, 기준② : 조업 중단 기간
- (전문가) 확정된 점수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주요 어획 어종, 어종별 수산자원관리 중요도, 휴어 시기의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 평가를 실시



□ 평가 기준

- (적합성 평가기관) 일시적·자율적 조업 중단 신청 시 구성원 참여 정도와 중단 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
 - 단체 구성원의 조업 중단 참여비율에 따라 기본 3점(구성원의 80% 이상 100% 미만 참여), 최대 5점(10% 참여) 부여

- 중단 기간에 따라 5단계로 평가 등급으로 분류

평가 지표				
일시적·자율적 조업중단 *해당 기간 전면 조업 중단 *특정 지역 조업 중단은 불인정	20	참여율 (5)	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	5
	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100% 미만 참여	3
		중단 기간 (15)	연속 60일 이상	13~15
			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	11~12
			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	9~10
			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	7~8
			연속 15일 이상 30일 미만	5~6

- (전문가 평가) 전문가가 단체의 중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의 1차 분류된 등급 내에서 중단 기간에 대해 최종 점수 부여

라. 이행 점검 단계(어업관리단)

□ 개요

- (점검 기간) 상시점검 : '26.2.23~9.30 / 집중점검 : '25.9.1.~9.30.
- (점검 대상) 조업 중단 항목을 선택한 신청 단체의 구성원

□ 점검 사항

- (이행 기준) 단체 또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조업 중단 기간 내 휴어 준수
- (이행 점검 내용) 어업관리단은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조업 중단 기간과 어업인의 출입항기록, 항적 자료 등의 대조를 통해 조업 중단 계획 준수 여부 확인 집중점검

시스템 확인

- (이행 준수 여부) 단체 및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조업 중단 기간 내 조업 사실이 없을 시 이행으로 처리
 - 조업 중단 기간 중 조업 목적의 항적 기록 등이 있을 경우 미이행으로 처리하고, 조업이 아닌 단순 출·입항인 경우는 이행으로 간주
- ※ 조업중단 기간 중 출입항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항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 시 이행 인정
 - 조업종료시 귀항 보고, 정부·지자체의 과학조사, 도서지역 또는 어선수리를 위한 이동 등

선택 의무 ③ 어획증명(전자어획보고)

가. 개요

- (이행 목적)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체계 구축과 정확한 조업상황 관리를 위한 어획증명제도에 참여를 유도
- (평가 방향) 전자어획보고를 통해 조업상황을 보고하는 구성원이 많은 신청 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

나. 신청 단계

□ 신청 방법

- 어획증명 항목을 선택한 신청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'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'에 어획증명 항목을 선택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
- 신청 단체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청 단체의 어획 증명 이행 계획을 작성 및 제출

□ 신청 단체 구성원(개인)

- (선정신청서 작성) 신청 단체의 구성원은 '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(개인)(별지 제3호)' 내 지급요건(준수의무) 중 어획증명 항목에 표기

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				
○ 지급요건(준수의무) : 선택 의무에 어획 증명 선택				
<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【별지 제3호】 >				
지급요건 (준수의무)	기본의무	선택의무		
	TAC 준수	일시적/자율적 조업중단	어획증명 (전자어획보고)	그 밖의 의무
	[]	[]	[○]	[]

- (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) 선정신청서에 어획증명 항목을 표기한 구성원은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 (개인)(별지 제4호)'의 '2. 선택의무', 어획증명 항목란에 이행 계획을 작성

- 개인은 신청 단체의 구성원과 합의하여 설정한 어획증명(전자 어획보고) 계획을 작성
- ※ 전자어획보고 : 해양수산부 "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(Application)"을 활용하여 어획보고(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사용 불가)

□ 신청 단체

- (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)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이행 계획은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(별지 제2호)'의 '2. 선택의무', 어획 증명 항목란에 작성
- 단체는 구성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(개인) 등을 토대로 단체의 어획증명 등 세부이행계획을 기간별로 작성
- 작성 항목 : 참여어선 수, 어획증명 방법(전자어획보고), 어획증명 관리시스템 앱 가입 여부, 증빙 자료 등

단체의 어획증명 이행세부계획서 작성요령				
○ 신청 단체는 해당 항목에 참여어선 수, 어획증명 방법, 증빙 자료 등 이행계획을 기재				
- 어획증명 항목 신청 단체는 이행 점검 기간 동안은 모든 어획보고를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을 활용하여 전자어획보고로 해야 이행 처리됨				
<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【별지 제2호】 >				
어획증명 (전자어획보고)	① 참여어선 수	② 어획보고 방법	③ 앱 가입 여부	④ 증빙 자료
	총 00명 중 00명 참여	어획증명 관리시스템 앱	O/X	해양수산부 조업감시시스템에 보고된 어획실적
① 참여어선 수 : 단체의 구성원 중 어획증명 준수 의무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 ※ 선택의무는 단체의 구성원 1/2(50%) 이상이 참여해야 함 예시)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경우 선택의무 참여어선은 15명 이상이어야 함				
② 어획보고 방법/기간 :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을 통해 보고 / '26.2.23~9.30 내 입력 보고				
③ 앱 가입 여부 : 앱 가입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확인 후 의무 선택 진행				
④ 증빙 자료 :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시스템에 보고된 어획실적				

다. 평가 단계(적합성 평가 기관)

□ 평가 체계 및 기준

- (신청 단체) 신청서에 참여어선 수, 어획증명 방법 등을 기재·제출
- (지자체) 신청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'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(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)'을 작성한 후 이행 세부계획 내용 등을 수산정보포털에 입력
- (평가기관) 신청 단체 구성원의 어획증명 참여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

평가 지표				
어획증명 (전자어획보고)	15	참여율 (15)	참여 구성원의 전원 참여	15
			참여 구성원의 90% 이상 100% 미만 참여	13
			참여 구성원의 80% 이상 90% 미만 참여	11
			참여 구성원의 70% 이상 80% 미만 참여	9
			참여 구성원의 60% 이상 70% 미만 참여	7
			참여 구성원의 50% 이상 60% 미만 참여	5

라. 이행 점검 단계(어업관리단)

□ 개요

- (점검 기간) 상시점검 : '26.2.23~9.30 / 집중점검 : '25.9.1.~9.30.
- (점검 대상) 어획증명을 선택한 신청 단체의 구성원

□ 점검 사항

- (이행 기준) 단체 또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**제시된 어획증명 기간** 내 전자어획보고 방법 준수 여부
- (이행 점검 내용) 어선별로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보고된 조업 상황보고 실적과 전자어획보고시스템(어획증명관리 앱)의 어획보고 실적을 대조하여 준수 여부 확인 집중점검 시스템 확인

※ 보고방법 : 조업일(연안) 또는 1항차(근해, 출항~입항)에 전자어획보고 1회이상 실시, 입항 기준 24시간 이내 보고. 단, 통신불가 해역의 경우 오프라인 보고기능 활용 또는 육상에서 선주 등이 대리입력

- (이행 준수 여부) 어선별로 이행점검 기간 중 어업안전조업국 위치 보고를 기준으로 조업일(연안) 또는 1항차(근해, 출항~입항)에 전자어획보고를 1회 이상한 경우가 80% 이상이면 이행으로 처리
- 단,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는 '어획물 없음'으로 어획보고시 이행처리, 연안어업은 1일 동안 여러 항차가 있어도 1회만 전자어획보고를 하면 인정

선택 의무 4 어선 감척

가. 개요

- (이행 목적)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 도모
- (평가 방향) 해양수산부, 지자체가 추진하는 감척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한 구성원이 없는 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

나. 신청 방법 및 단계

□ 신청 방법

-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내 어선감척 항목 별도 선택 불필요
-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(9.30.)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
 -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선정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(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)

□ 신청 단체

- (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) 어선 감척에 대한 이행 계획은 '수산 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(별지 제2호)'의 '2. 선택의무' 중 어선 감척 항목란 작성
 - 작성 항목 : 신청 단체 구성원의 업종(어업의 종류) 명칭

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		
○ 신청 단체는 이행 세부계획서 내 어선 감척 항목에 '신청 단체의 업종 명칭'을 기재 <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【별지 제2호】 >		
어선 감척	단체의 어업종류명	증빙 자료
	근해연승	-

다. 평가 단계(해수부)

□ 평가 기준 및 방법

- (평가 기준)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의 감척 사업에 최근 3년간 참여(지정 감척 포함)한 후 감척사업을 중도 포기한 어선이 있는지 여부
 - 1)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('22.10.1.~'25.9.30.)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없는 경우 5점을 부여
 - 2)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('22.10.1.~'25.9.30.)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있는 경우 3점을 부여
- (평가 방법) 해양수산부, 지자체 감척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점수 산출

평가지표			
준수의무	배점	평가지표	점수
어선 감척	5	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('22.10.1.~'25.9.30.)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없는 경우	5
		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('22.10.1.~'25.9.30.)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있는 경우	3

선택 의무 5 그 밖의 의무

가. 개요

- (이행 목적)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보호 활동 증진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 등 의무 준수 참여 확산
- (평가 방향) 다양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

나. 신청 단계

□ 신청 단체 구성원

- (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) 단체 구성원 간 합의로 그밖의 의무 항목을 선택한 단체의 구성원은 '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(개인)(별지 제3호)'의 지급요건(준수의무) 그밖의 의무 항목에 표기

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			
○ 지급요건(준수의무) :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중 '그 밖의 의무'에 표기			
<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【별지 제3호】 >			
	기본의무	선택의무	
지급요건 (준수의무)	TAC 준수	일시적/자율적 조업중단	어획증명 (전자어획보고)
	[]		그 밖의 의무
			[○]

- (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) 구성원은 그 밖의 의무에 대한 세부 항목 이행 계획을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(개인)(별지 제4호)'의 '2. 선택의무', 그 밖의 의무 항목란에 작성

※ 자세한 작성 요령은 신청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부문 참고

□ 신청 단체

- (의무 항목 설정) 신청 단체는 구성원 합의를 통해 그 밖의 의무인 ① 해양쓰레기 수거, ② 어구보증금제 이행, ③ 생분해성 어구 사용, ④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, ⑤ 어구 제한, ⑥ 채포 체장·체중 제한, ⑦ 종자방류, ⑧ 기타 준수 의무 제시 중 최대 3개 항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나, 최대 10점 부여
- ※ 그 밖의 의무를 다수 설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선택의무는 1개로 간주되며, 신청한 다수의 의무 중 1개라도 미이행 판정 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안내
- ※ 어구 제한, 채포 체장·체중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를 선택할 경우 이행 점검계획서 작성시 '현장점검 가능시기(예시, '25.5월)' 명기하여 제출
- 선택한 항목에 대한 이행 계획은 '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(시행지침 별지 2호 서식)'의 '2. 선택의무', 그 밖의 의무 항목에 작성

단체의 그 밖의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			
○ 신청양식 내 구분에서 단체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그 밖의 의무 항목에 대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, 이행할 내용 및 기간, 증빙 자료 등을 기재			
※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			
※ 최대 3개 항목까지 선택가능하나 최대 10점만 부여			
<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【별지 제2호】 >			
그 밖의 의무	①	②	③
	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	증빙 자료
	해양쓰레기 수거	총 00톤(척당 00톤) '26.1.1.~9.30.	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
	어구보증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00명 중 00명 참여	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 조기자망, 대계통발 등	보증금 지급 현황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
	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총 00명 중 00명 참여	근해안강망, 연안개량안강망 등	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
	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	그물코 54mm → 66mm 이상 사용 '26.1.1.~9.30. 통발 사용갯수 (2,500개~2,000개) 제한 '26.1.1.~9.30.	회의록, 세부이행계획, 준수사진 등
	채포 체장·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	채포금지체장·체중 설정 (감성돔 25→30cm, 대문어 600→650g)	회의록, 세부이행계획, 준수사진 등
	종자방류 총 00명 중 00명 참여	낙지 10만, 꽃게 20만미 '26.6.1.~6.30.	회의록, 종자구매내역, 방류사진 등

① 이행할 의무 : 단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그 밖의 의무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, 최대 3개 항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, 최대 10점 부여

- 준수 의무 인정 항목 수는 1개이며, 최대 인정 점수는 10점임
- 신청한 다수의 의무 중 1개라도 미이행 판정 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반드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

② 참여어선 수 :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'그 밖의 의무' 항목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
 ※ 예시)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단체가 그 밖의 의무를 2개 신청한 경우, 의무별 참여어선은 각각 24명 이상이어야 함

<올바른 예시>

그 밖의 의무	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 저인망어구 54→66mm이상 사용 '26.1.1.~9.30.	증빙 자료 단체 협약서, 준수사진 등
	그물코 크기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		

<잘못된 예시>

그 밖의 의무	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 저인망어구 54→66mm이상 사용 '26.1.1.~9.30.	증빙 자료 단체 협약서, 준수사진 등
	그물코 크기 제한 총 30명 중 12명 참여		

※ 이행 의무별로 단체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밖의 의무의 총 참여어선 수가 단체 구성원의 4/5(80%) 이상이어더라도, 이행 의무별 참여어선 수가 단체의 구성원 4/5(80%) 미만일 경우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됨

③ 준수 의무별 이행 내용 및 기간, 증빙자료

③-1. 해양쓰레기 수거 : 참고1 참조

③-2. 어구보증제 이행

- 「수산업법」 제81조에 따라 어구보증금제도를 이행
- 인정되는 증빙 자료 : 어구보증금 지급 현황 등

<올바른 작성 예시>

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	증빙 자료
어구보증금 이행 총 30명 중 24명 참여	대계통발 등	어구보증금 지급 현황 등

③-3. 생분해성 어구 사용

- 인정 생분해성 어구 : 단체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생분해성 어구명을 작성하여야 하며, 국가에서 인정하는 생분해성 어구만 인정됨

※ 국가 인정 생분해성 어구 : 생분해성어구 성능검사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

- 인정되는 증빙 자료 :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,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등

<올바른 작성 예시>

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	증빙 자료
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30명 중 24명 참여	조기저망, 대게통발 등	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

③-4.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

-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할 대상어구명을 작성하여야 함
- 인정되는 증빙 자료 :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
- 「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(국립수산과학원)」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

<올바른 작성 예시>

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	증빙 자료
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총 30명 중 24명 참여	근해안강망, 연안개량안강망 등	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

③-5. 어구 제한

- 단체에서 합의한 어구사용량 제한 계획 또는 그물코 크기 제한 계획과 이행기간을 작성하여야 함. 단, 어구사용량 제한 계획 및 그물코 크기 제한 계획은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45조의3(어구의 규모등의 제한) 제1항, 제3항에 제시된 제한량, 제한 규격보다 강화된 의무만 인정되며,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미인정
- 신청서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인정되는 증빙 자료 :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준수 사진 등

<올바른 작성 예시>

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	증빙 자료
어구사용량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	통발 사용갯수 제한 (2,500개→2,000개) '25.1.1.~9.30.	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준수사진 등
그물코 크기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	그물코 54→66mm이상 사용 '25.1.1.~9.30.	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준수사진 등

③-6. 채포 체장·체중 제한

- 단체에서 합의한 채포 체장·체중 제한 계획, 이행기간을 작성하여야 하며, 「수산 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(포획·채취금지)에 제시된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및 체중 제한보다 강화된 의무만 의무만 인정되며,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미인정

- 신청서 제출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인정되는 증빙 자료 :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준수 사진 등

<올바른 작성 예시>

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	증빙 자료
채포 체장·체중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	채포금지체장·체중 설정 (감성돔 25→30cm, 대문어 600→650g)	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준수사진 등

㉓-7. 종자방류

- 신청 단체에서 방류하기로 결정한 품종명, 방류량, 방류시기를 작성하여야 함
- 신청서 제출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인정되는 증빙 자료 :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준수 사진 등

<올바른 작성 예시>

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	이행할 내용, 기간 등	증빙 자료
종자방류 총 30명 중 24명 참여	낙지 10만 꽃게 20만미 '26.6.1.~6.30.	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준수사진 등

㉓-8 기타 준수 의무

- 선제시된 그 밖의 의무 이외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타 수산자원 보호 준수 의무 계획 및 증빙자료를 작성
- 신청서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 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단, 이행 점검이 가능한 계획만 인정됨

다. 평가 단계(적합성 평가 기관)

□ 평가 체계

- (신청 단체) 신청서에 참여어선 수, 준수 의무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
- (지자체) 신청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'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(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)'을 작성한 후 이행 세부계획 내용 등을 수산정보포털에 입력

- (평가기관) 단체의 구성원 참여 비율 또는 단체 구성원 간 준수 의무 계획 협약 여부 등에 따라 배점 등급을 확정

평가지표					
그 밖의 의무	10	최대 3개 항목 신청 가능(단, 최대 10점만 반영)			
해양쓰레기 수거	5	참여율 (2)	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	2	
	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100% 미만 참여	1	
	수거량 (3)	근해어업		연안어업	
		척당 3.5톤 이상	척당 200kg 이상		3
		척당 2톤 이상 3.5톤 미만	척당 100kg 이상 200kg 미만		2
		척당 1톤 이상 2톤 미만	척당 50kg 이상 100kg 미만		1
어구보증금제 이행	5	어구보증금제도 대상 여부		5	
생분해성 어구 사용	5	단체 구성원의 90% 이상 참여		5	
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90% 미만 참여		3	
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	5	단체 구성원의 90% 이상 참여		5	
		단체 구성원의 80% 이상 90% 미만 참여		3	
어구 제한	5	어구사용량 제한 또는 그물코 크기 제한 등 시행 여부		5	
체장·체중제한	5	포획 체장·체중 제한 시행 여부		5	
종자방류	5	종자방류 여부		5	
기타 준수 의무	5	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		5	

□ 평가 기준

- 신청 단체 구성원의 해당 의무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되는 의무 항목과 이행 계획 제시 여부에 따라 평가되는 의무 항목으로 구분
- (구성원 참여 비율 평가) 생분해성어구 사용,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의무를 신청한 단체는 구성원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5점 부여
- (단체 협약 여부 평가) ① 어구 제한, ② 채포 채장·체중 제한, ③ 수산 종자 방류, ④ 기타 준수 의무를 신청한 단체의 경우, 이행 계획 제시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

라. 이행 점검 단계(어업관리단)

□ 개요

- (점검 기간) 상시점검 : '26.2.23~9.30 / 집중점검 : '25.9.1~9.30.
- (점검 대상) 그 밖의 의무를 신청한 신청 단체의 구성원

□ 점검 사항

- (이행 기준) 단체 또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이행할 의무 계획 준수
- (이행 점검 내용) 어업관리단은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이행 계획과 이행 기간에 대해 상시점검 실시, 어업인의 출입항기록 또는 증빙자료 등의 대조를 통해 준수 여부 확인

상시점검

시스템 확인

- ※ 어업인이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 : 준수의무 관련 보조금 교부 확정서, 준수의무 관련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, 증빙 사진 등
- (이행 준수 여부)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이행 계획과 상시 점검 결과 또는 어업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등을 대조하여 계획 준수 시 이행으로 처리

참고 1 해양쓰레기 수거 의무 작성 요령

- ① 참여어선 수 :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'해양쓰레기 수거' 준수 의무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
 예시)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경우 선택의무 참여어선은 24명 이상이어야 함
- ② 수거 계획량 : 단체의 구성원이 '26.1.1.~9.30. 동안 수거할 해당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량과 이를 합산한 단체의 총 수거 계획량을 기재
 ※ 수거량 단위는 근해어업의 경우 '톤'으로 기재, 연안어업의 경우 'kg'으로 기재
 - 단체의 총 수거 계획량은 단체 구성원의 협약을 통해 설정한 해당 수거량을 총 합한 것으로 산출되어야 함
 예시) 해양쓰레기 수거 항목 참여어선 24명인 연안어업 단체가 이행계획기간 동안의 개인별 수거량을 100kg으로 협약한 경우, 단체의 총 수거량은 2,400kg으로 기재
 - 수거 계획량은 근해어업 단체의 경우 최소 해당 1톤 이상, 연안어업 단체의 경우 최소 해당 50kg 이상이어야 인정
 - 신청 단체는 제시한 수거 계획량 미준수 시 미이행으로 처리 및 직불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반드시 이행 가능한 수거 계획량을 설정
 - 단, 근해어업 단체 중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연안어업 기준과 동일하게 계획 가능(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구성된 근해어업 단체는 적합성 평가 시 연안어업 평가기준 적용)

<올바른 작성 예시>

구분	참여어선 수	수거 계획량 및 기간	증빙자료
사례1 연안어업 단체	총 30명 중 24명 참여	총 2,400kg(적당 100kg), '26.1.1.~9.30.	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
사례2 근해어업 단체	총 27명 중 27명 참여	총 54톤(적당 2톤), '26.1.1.~9.30.	지자체 실적증명서

<잘못된 작성 예시>

구분	참여어선 수	수거 계획량 및 기간	증빙자료
사례1(근해어업 기준) 최소 참여어선 수 또는 최소 수거계획량 미달	총 20명 중 14명 참여	총 7톤(적당 0.5톤), '26.1.1.~9.30.	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
사례2 월 단위 수거량 제시	총 30명 중 27명 참여	월 2톤, '26.1.1.~9.30.	지자체 실적증명서
사례3 횃수 제시	총 30명 중 30명 참여	월 1회, '26.1.1.~9.30.	수협 수매확인서

※ 사례1 : 최소 참여어선 수 또는 최소 수거량에 미달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됨

※ 사례2, 3 : 수거 계획량을 월단위, 수거 횃수로 제시할 경우 타 단체와의 수거량 비교 불가, 이행점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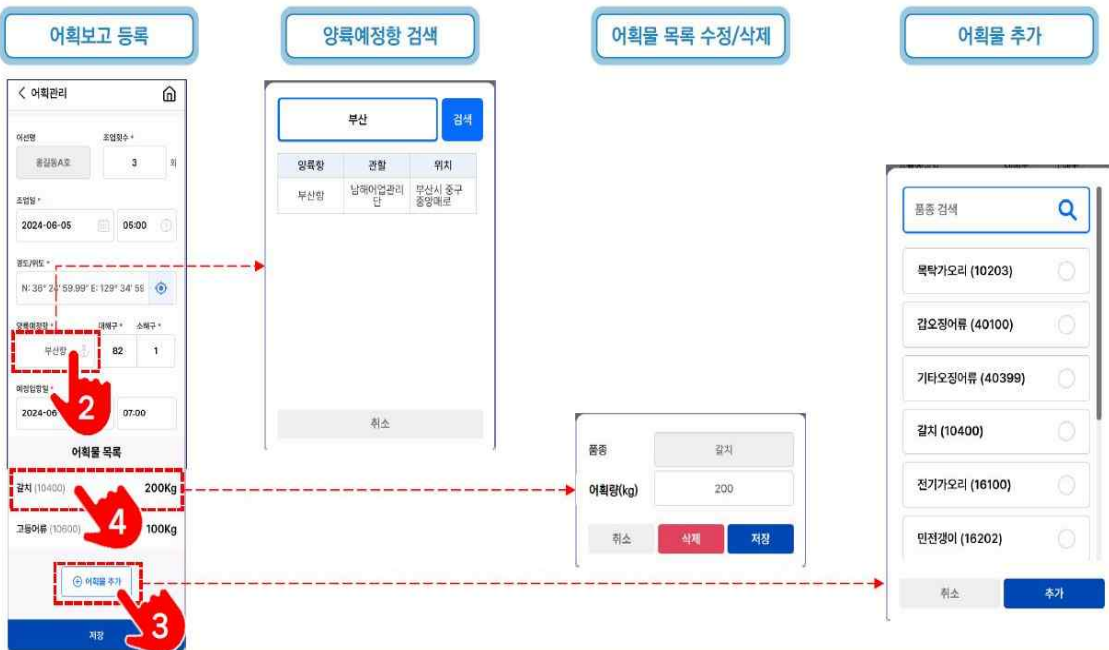
- ③ 증빙 자료 : 이행 점검 시 제출할 증빙자료명을 기재하여야 하며, 지급대상 후보 단체는 이행 점검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
 - 인정되는 증빙 자료 :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기재된 증빙자료(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, 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의 실적증명서, 기타 수거확인증, 수협 수매확인서, 계량증명서 및 증빙사진 등)
 - 단, 수협 수매확인서 제출시 무게로 환산하여 이행점검 실시, 계량증명서 제출시 쓰레기 수거 증빙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④ 이행 점검 :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(단체) 서식에 제시된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량과 어업인이 신청 시 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 증빙자료의 대조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
 - ※ 어업인이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 :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기재된 증빙자료(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, 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의 실적증명서, 기타 수거확인증, 수협 수매확인서, 계량증명서 및 증빙사진 등)
 - 단, 수협 수매확인서 제출시 무게로 환산하여 이행점검 실시, 계량증명서 제출시 쓰레기 수거 증빙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⑤ 이행 준수 여부 : 단체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단체의 해양쓰레기 총 수거 계획량 달성 시 단체 구성원 전원 이행으로 처리
 - 단체의 해양쓰레기 총 수거 계획량 미달성 시, 개인 어선별 적당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량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 점검 진행

참고 2 전자어획 보고 방법 (예시)



상세 설명

1. 메인화면에서 <어획보고> 항목을 선택한다.
2. 조업 조회기간, 품종 조회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정보만 조회할 수 있다.
3. [상세접기] 버튼을 눌러 검색창을 닫을 수 있다.
4. 어획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어획보고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.



상세 설명

1. 어획보고 정보를 입력한다. 이때 경도/위도는 어획보고를 입력하는 기기(휴대폰 등)의 GPS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,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.
2. 양륙예정장 칸을 선택하면 항구 검색 팝업이 나타나며, 검색한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한다.
3. [어획물 추가] 버튼을 누르면 품종 검색 팝업이 나타나며, 원하는 품종을 선택하여 어획물을 추가한다.
4. 어획물 목록의 항목을 선택하면 어획량을 수정하거나 해당 품종을 삭제할 수 있다.